

주요 정책토론

본고는 1998년 7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바 있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철폐에 관한 공청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철폐에 관한 공청회

일 시: 1998. 7. 20. (월) 13:30~16:50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좌 장: 송 자 명지대학교 총장

토 론: 김중석 홍익대학교 교수

주 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이대로 좋은가?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주필

발표1: 심야영업규제 폐지의 필요성

손봉호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공 영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이계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발표2: 심야영업 허용조치 철회되어야 한다

이주영 서울 YWCA 회장

(신종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가나다 순)



발표 1 : 심야영업규제 폐지의 필요성

사공영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정당화하기 어려운 규제목표

- 심야영업규제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질서는 심야범죄의 예방과 과소비의 억제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발생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상관관계가 적음 (부산시의 경우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였으나 범죄발생은 0.1% 감소).
 - 개인 효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음주소비를 억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즉, 경제상황이 심야음주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음주규제에 따른 소비절약분이 경제활동을 위한 투자재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음주소비감소에 따른 효용의 감소분이라는 기회비용을 초과할 수 있어야 하나 이미 비밀영업이 만연한 상황이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불합리한 재산권 재분배 효과

- 영업시간 준수업소의 영업권은 손상되는 반면, 불법적 비밀업소의 영업권은 가치를 유지하게 되며, 심야업소의 서비스 요금 상승압력에 따라 고객의 소득이 불법 심야업소와 종사자의 소득으로 재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함.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상이할 경우 지역간의 재산권 배분도 일어날 수 있음.

□ 부정부패와 유착관계의 조장

- 현실적으로 심야영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불법영업은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법업소의 양산, 단속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지하경제의 확산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개인의 자유 침해

- 음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간섭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행태를 제약하고 행정의존심리를 부추겨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함.

발표 2 : 심야영업 허용조치 철회되어야 한다

신종원/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 심야영업 허용조치 철회의 근거

- 환경과 생태계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 등은 시장에서의 경쟁효율성이나 경제논리보다 우선하여 사회의 공공이익과 미래를 위해 사회적 규제가 요청되는 영역임.
- 유흥업소 심야영업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사회적 공론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

- 규제완화에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나, 심야영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국가경쟁력 회복, 시민사회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 등 어느 면에서도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

□ 심야영업 제한조치 유지의 근거

- 경찰력 낭비, 공무원 비리조장, 준법업소의 피해 등은 심야영업 자체의 부작용이 아니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체계 자체의 문제이며,
- 제한 폐지시 경쟁의 심화로 인한 업소의 불법, 퇴폐, 변태 등 영업행위의 증가, 인신매매의 부활 가능성이 있으며,
- 지나치게 유흥화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는 심야영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